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

의 안 번 호 35

제출년월일: 2014.11. . 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2015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5개 기금 18,1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6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- 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	금 명	2014년도말 조 성 액@	2015년 운용계획		2015년도말	증 감
			수입 b	지출 ⓒ	(d=a+b-c)	e=d-a
합	계(5건)	17,526,755	1,831,341	1,195,618	18,162,478	635,723
통힙	관리기금	8,201,114	198,700	197,553	8,202,261	1,147
사회	복지기금	4,920,988	885,855	107,700	5,699,143	778,155
체육	-진흥기금	3,221,348	279,921	50,000	3,451,269	229,921
식품	진흥기금	105,036	40,778	40,365	105,449	413
재닌	관리기금	1,078,269	426,087	800,000	704,356	△373,913

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
※ 융자금은 지출 ⓒ에 포함하여 계상함.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27조 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